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3326
----------	------

발의연월일 : 2026년 8월 28일

발 의 자 : 최 승 태 의원

1. 제안이유

- 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집중호우·가뭄 등 기후위험이 일상화되고 그 피해가 시민의 삶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재난의 예방·피해 경감과 기후취약계층 보호 등 적응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 이에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탄소를 줄이는 도시’와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를 동시에 구현하는 감축·적응 통합형 기후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고, 하남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회복력 향상 및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나. 기금의 용도 및 운용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기금운용계획·결산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기금사업의 선정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제정조례안 : 덧붙임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라. 기타사항 : 덧붙임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후변화의 원인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하남시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적응역량 및 기후회복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 대응사업”이란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 확충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기후변화 적응사업”이란 기후변화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폭염·한파·홍수·가뭄·산불 등 기후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기후회복력”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충격을 예방·흡수·회복할 수 있는 도시의 능력을 말한다.
4. “기후취약계층”이란 나이, 건강상태, 소득수준, 직업 또는 주거환경 등의 사유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집단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줄이며 기후회복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판매 수입
5.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 환경관련법에 따른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사용한다.

1.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사업
2.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확대에 관한 사업
3.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관한 사업
4. 친환경·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

5. 탄소흡수원의 확충·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업
6. 자원순환 및 저탄소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줄이고, 기후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사용한다.

1. 폭염·한파 등 극한기후에 따른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
2. 집중호우·홍수·침수·가뭄 등 물 관련 기후위험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업
3. 도시열섬 등 도시 열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도시 기반시설의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업
5. 기후취약계층의 보호 및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
6. 산림, 생태계, 농업 및 수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사업
7. 기후재난의 예측·예방·대응체계 구축 및 기후회복력 강화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기금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공통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3.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4. 시민·기업·학교·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5. 국가·경기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6.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관련 공모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기금 운용의 기본원칙)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가 크거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하남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豫託)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재원 배분에 관한 사

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업무 소관 부서 또는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하남시 공무원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기후변화 대응 또는 적응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의 관리·운용 또는 재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 및 심의·의결 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기금사업의 선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2. 기후변화 대응 또는 적응에 미치는 효과
3. 사업의 지속가능성
4.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미치는 효과
5. 사업의 수혜 범위 및 시민 체감도
6.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을 공모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 지원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 효과 또는 적응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성과분석 및 활용)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및 탄소흡수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의 성과
2. 기후위험 및 재난피해 저감, 기후취약계층 보호 및 기후회복력 향상 등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성과

3.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등 공통사업의 성과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규정의 준용)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고,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하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운용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7조에 따른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제10조에 따른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기후대응기금”을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하남시기후대응기금”을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하남시기후대응기금”을 “하남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기금”으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6. 4. 9.] [법률 제21542호, 2026. 4. 9., 일부개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④ (생략)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재정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2026. 2. 5., 일부개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5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시행 2023.08.04.](제정) 2023.08.04 조례 제2215호

제8조(사업범위) 시장은 법 제5장에서 제10장까지 해당 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한다.

1. ~ 7. (생략)

8.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22조(하남시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2026. 8. 14. 현재)

연번	자치단체명	법 규 명	제·개정 일	소관부서	비고
1	경기도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5-10-10	기 후 환 경 정 책 과	
2	광명시	광명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4-12-23	탄소중립과	
3	성남시	성남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4-12-16	기후에너지과	
4	광주시	광주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4-12-16	기후탄소과	